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정태호의원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432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2 |
| 1.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액공제 제도 신설<br>(정태호의원·박수영의원안) ..... | 2 |



## I. 개요

### 1. 정태호의원·박수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432호)

####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정태호의원·박수영 등 20인
- (2) 발 의 일 : 2026. 3. 12.
- (3) 회 부 일 : 2026. 3. 13.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4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는 38점으로 142개국 중 88위를 차지하며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관심 뿐만 아니라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액공제 제도 신설(정태호·박수영의원안)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p>□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제16조 및 제17조<sup>1)</sup>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li> <li>○ 공제금액: 상속세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li> <li>○ 상속공제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li> <li>○ 시행일: 2027년 1월 1일</li> <li>○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li> </ul> |

\* 정태호·박수영의원안 2026. 3. 12. 발의(의안번호 17432)

□ 개정안은 유산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sup>2)</sup>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공익신탁을 통한 출연 포함)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려는 것임.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 장례비용, 공과금을 제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을 가산한 금액

출연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하되, 공익법인등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1) 공익법인등 개요

- 현행법<sup>3)</sup>은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유증하거나 출연하는 재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 조세혜택을 받은 공익법인등이 그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출연재산의 ① 직접 공익목적사용, ②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③ 결산서류 공시, ④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일정 의무 규정<sup>4)</sup>을 두고 있고, 공익법인등을 통한 기업의 우회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⑤ 주식등의 지분 취득·보유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공익법인이란 일반적으로 「민법」 제32조<sup>5)</sup> 및 「공익법인의 설립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제50조의2, 제50조의3

### 5)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학자금·장학금·연구비의 보조, 학술, 자선 등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데, 세법<sup>6)</sup>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규정하면서 종교단체·공익단체 등 법인이 아닌 단체 등도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공익법인등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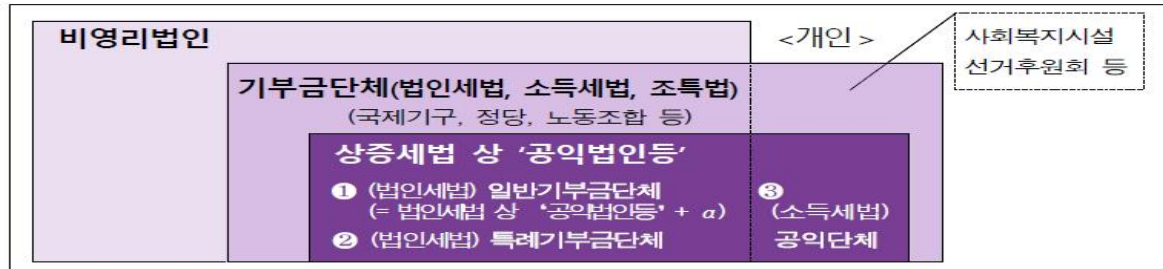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예시: 아산사회복지재단, 삼성의료재단 등)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예시: 평생교육시설, 산학협력단, 한국장학재단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참고: 비영리법인, 기부금단체, 공익법인등 비교<sup>7)</sup> ]



- ① 비영리법인: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기부금단체: 세법상 규정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단체  
 ③ 공익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기부금단체

□ 2024년 말 기준 40,330여개 공익법인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상속·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법인 수는 2024년 말 기준 12,864개로 2020년 10,953개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기부받은 금액 또한 2020년 8조 7천억원 수준에서 2024년 10조원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

[공익법인 현황]

(단위: 개)

| 구분                  | 총계     | 종교 <sup>1)</sup> | 학술장학  | 사회복지  | 교육    | 의료    | 문화예술  | 기타    |
|---------------------|--------|------------------|-------|-------|-------|-------|-------|-------|
| 가동법인수 <sup>2)</sup> | 40,330 | 22,189           | 3,888 | 5,575 | 1,981 | 1,055 | 1,675 | 3,967 |
| 공시법인수 <sup>3)</sup> | 12,864 | —                | 2,955 | 3,455 | 1,998 | 1,094 | 1,053 | 2,309 |
| 3억 이하               | 3,287  | —                | 605   | 786   | 414   | 159   | 392   | 931   |
| 5억 이하               | 705    | —                | 178   | 222   | 71    | 12    | 74    | 148   |
| 10억 이하              | 1,757  | —                | 652   | 578   | 111   | 18    | 113   | 285   |
| 50억 이하              | 3,466  | —                | 919   | 1,251 | 364   | 155   | 295   | 482   |
| 100억 이하             | 1,351  | —                | 239   | 383   | 258   | 255   | 77    | 139   |
| 500억 이하             | 1,661  | —                | 304   | 205   | 480   | 383   | 84    | 205   |
| 1,000억 이하           | 280    | —                | 26    | 17    | 124   | 62    | 9     | 42    |
| 1,000억 초과           | 357    | —                | 32    | 13    | 176   | 50    | 9     | 77    |

주1)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공익목적사업 자산 규모 현황에서 제외

주2) 2024. 12. 31. 기준

주3)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법인 수

자료: 국세청

7) 국세청, 2026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 [공익법인 연도별 기부금 수입<sup>1)</sup> 현황]

(단위: 개, 억원)

| 공시연도 <sup>2)</sup>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공시법인수              | 10,953   | 11,203   | 11,557   | 11,727   | 12,864    |
| 기부금액 <sup>3)</sup> | 8조 7,369 | 8조 4,099 | 9조 5,836 | 9조 2,168 | 10조 1,431 |

주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따라 공익법인이 최근 5년간 공시한 결산 서류상 기부금(출연) 수입금액

주2) 해당 공시연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기부금을 수취한 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주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의 '㉔기부금' 항목의 합계

자료: 국세청

## (2) 영국의 Legacy 10 제도<sup>8)</sup>

□ 한편, 영국의 'Legacy 10' 제도는 '누구나 기부가 일상인 사회 (make it the norm to give)'라는 목표 아래 2012년 4월 시행된 영국의 "세울감면형" 유산기부 장려 정책으로, 총유산가액에서 채무와 비용을 차감한 순유산(net estate)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나머지 재산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4%p 인하하는 것임.

이는 2010년 출범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보수-자민 연립정부가 추진한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 구상의 일환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확대된 정부지출과 개입을 축소하면서도,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2024년 영국의 유산 기부 총액은 45억 파운드로 2012년 23.2억 파운드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자선유산의 숫자는 2013년 3

8)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2025.12. 참조

만 7천 건에서 2024년 4만 6천 건으로 22% 증가하는 등 제도 도입 이후 유산기부 문화 정착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3) 검토의견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영국의 「Legacy 10」 제도를 우리나라 상속세 체계에 맞게 ‘세액공제’ 방식으로 도입<sup>9)</sup>하여 공익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첫째, 부의 양극화 심화로 자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공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공익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공익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공익법인등에의 기부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빈곤·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교육·의료 등 가치재(Merit Goods)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장려하여야 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공익법인등에의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세제로 지원하는 것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 조정의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9) 영국의 상속세율은 40% 단일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인하 방식으로 하더라도 세액 계산이 단순 명확하나,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인하 방식보다는 10% 세액공제 방식이 행정집행의 단순성과 국민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

둘째, 자산불평등의 심화로 공익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간 기부 수준은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5년 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평균 -771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자산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평균 21억 7,122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의 46.1%에 해당하는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순자산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sup>10)</sup>는 2017년 0.584에서 2025년 0.625로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순자산 10분위별 가구 점유율]

| 순자산 10분위별 | 2017           |            | 2025           |            |
|-----------|----------------|------------|----------------|------------|
|           | 평균 순자산<br>(만원) | 점유율<br>(%) | 평균 순자산<br>(만원) | 점유율<br>(%) |
| 전체        | 31,572         | 100.0      | 47,144         | 100.0      |
| 순자산 1분위   | -666           | -0.2       | -771           | -0.2       |
| 순자산 2분위   | 2,565          | 0.8        | 3,029          | 0.6        |
| 순자산 3분위   | 6,187          | 2.0        | 7,606          | 1.6        |
| 순자산 4분위   | 10,622         | 3.4        | 13,317         | 2.8        |
| 순자산 5분위   | 15,912         | 5.0        | 20,067         | 4.3        |
| 순자산 6분위   | 22,050         | 7.0        | 28,149         | 6.0        |
| 순자산 7분위   | 29,536         | 9.4        | 39,080         | 8.3        |
| 순자산 8분위   | 40,131         | 12.7       | 56,645         | 12.0       |
| 순자산 9분위   | 57,393         | 18.2       | 87,040         | 18.5       |
| 순자산 10분위  | 131,916        | 41.8       | 217,122        | 46.1       |

자료: 2025 가계금융복지조사

10) 순자산 지니계수: 순자산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함

### [순자산 지니계수 현황]

| 연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순자산 지니계수 | 0.584 | 0.588 | 0.597 | 0.602 | 0.603 | 0.606 | 0.605 | 0.612 | 0.625 |

자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영국 자선지원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 CAF)이 발표한 ‘2024 세계기부지수’<sup>11)</sup>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는 38점으로 세계 142개국 가운데 88위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같은 기관에서 2018년 발표 시 기부지수 순위(60위)보다 하락한 수치임.

셋째, 개정안의 세액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높은 부유층에게 큰 기부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부의 사회환원을 촉진하고 부유층으로부터 기부문화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음.

100억원의 상속재산 중 10억원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경우를 가정하면 과세가액은 90억원이 되고 일괄공제만 적용 시 산출세액<sup>12)</sup>은 37억 9천만원이 되는데, 개정안은 산출세액의 10%인 3억 7,900만원을 감면해주는 효과가 있게 됨.

11) 세계 14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로 약 1,000명의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는가’, ‘자선단체에 금전적인 기부를 한 적 있는가’, ‘자선단체에 시간을 들여 도움을 준 적이 있는가’ 3가지 질문을 물어보고, 집계된 통계를 기반으로 지수를 산출  
[https://www.cafonline.org/docs/default-source/inside-giving/wgi/wgi\\_2024\\_report.pdf](https://www.cafonline.org/docs/default-source/inside-giving/wgi/wgi_2024_report.pdf)

12) 과세표준: 85억원=90억원(상속세과세가액)-5억원(일괄공제),  
 산출세액: 37.9억원=85억원(과세표준)×50%(세율)-4.6억(누진공제액)

□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복된 조세지원으로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다만, 과세가액 불산입은 기부 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권의 이론적 배제(과세 대상 제외)인 반면, 세액공제는 잔여 유산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통해 기부의 한계 효용을 높이는 정책적 인센티브로 그 목적과 효과가 명확히 구별된다는 의견이 있음<sup>13)</sup>.

둘째, 공익법인등을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공익법인등 출연 재산을 사적으로 편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공익법인등은 출연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일부 공익법인등에서 출연 재산을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유용하는 등으로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공익법인 연도별 사후검증<sup>1)</sup> 추정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법인수 | 320  | 297  | 335  | 363  | 303  |
| 세액  | 330  | 347  | 397  | 264  | 198  |

주1) 공익법인 사후검증은 회계부정 등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한 개별검증과 전산사후관리로 나누어 관리

13)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2025.12. 참조

[공익법인 연도별 개별검증<sup>1)</sup> 추정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 출연재산<br>공익목적 사용 | 특수관계인<br>인건비 | 전용계좌<br>미신고 | 주식보유<br>기준위반 | 기타     |
|------|-----|-----------------|--------------|-------------|--------------|--------|
| 2021 | 법인수 | 23              | 24           | 5           | 16           | 35     |
|      | 세액  | 2,458           | 4,049        | 653         | 16,475       | 7,456  |
| 2022 | 법인수 | 39              | 21           | 5           | 4            | 46     |
|      | 세액  | 4,960           | 4,616        | 518         | 8,939        | 13,267 |
| 2023 | 법인수 | 50              | 14           | 9           | 24           | 52     |
|      | 세액  | 3,452           | 2,843        | 595         | 17,822       | 12,151 |
| 2024 | 법인수 | 41              | 11           | 13          | 32           | 36     |
|      | 세액  | 5,812           | 2,262        | 476         | 10,367       | 3,316  |
| 2025 | 법인수 | 18              | 10           | 1           | 34           | 41     |
|      | 세액  | 4,198           | 1,295        | 4           | 2,609        | 4,982  |

주1) 회계부정 등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개별검증

□ 동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기부를 장려하고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은 현재에도 한도 없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어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공익법인을 이용한 우회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출연에 대해서는 상증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두고 있는 현행 규정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 보임.

또한, 상속세 누진세율 체계에서 고액자산가의 기부일수록 상속세 감면 혜택이 증가하므로 과세형평 측면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후(死後) 재산 기부에 대해 과도한 상속세 감면 혜택을 제공

하는 경우 사전(死前) 기부 유인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만 초과하면 10% 세액공제되어 특정 금액 이상으로 기부할 유인이 없어지는 문턱효과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며, 기부금에 대해 상속세 감면을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개인의 기부에 대해 정부가 재정(상속세수)으로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임.

□ 입법정책적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기부대상 공익법인등의 요건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sup>14)</sup>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국민이 예측가능하도록 법률에 대강을 정한 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① 현행법<sup>15)</sup>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 분야는 종교, 학술, 장학, 사회복지, 교육, 보건의료, 문화예술, 체육, 환경보전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한데, 개정안의 세액공제 혜택이 현행의 비과세혜택에 더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임을 고려한다면,

보다 많은 기부자원이 집중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공익성 높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조의2(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은 분야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 제16조<sup>16)</sup>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비율을 20%까지 허용하여 일반 공익법인등(10%)에 비하여 우대하고 있음.

② 또한, 일부 공익법인등에서 출연 재산을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유용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점<sup>17)</sup>을 고려한다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현행법상 공익법인등이 이행하여야 하는 각종 의무<sup>18)</sup>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적절한 공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다.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17) 국세청 보도자료, “기부금으로 상품권 꺾. 고급 수상복합 아파트 구입?”. 2025.3.10.

18) 출연재산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의무(제48조제2항),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제48조

익법인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기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재정경제부는 현행법상 주식등 기부 시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등 보유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여야 하나,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상속세액을 감면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현행 규정과 상충되는 점이 있다는 의견임.

#### [유형별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 유 형                                                                                                       | 불산입 한도 |
|-----------------------------------------------------------------------------------------------------------|--------|
| ① 일반 공익법인                                                                                                 | 10%    |
| ② 의결권 불행사 및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공익법인(③,④ 공익법인 제외)                                                               | 20%    |
|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공익법인                                                                                   | 5%     |
| ④ 상증법§48⑪의 요건*을 미충족 공익법인<br>*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공익법인등의 이사회 구성시 특수관계인이 현원의 1/5 초과하지 않을 것 | 5%     |

동 규정이 주식등 출연을 통해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상속·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주식등을 기부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

제8항), 자기내부거래 금지 의무(제48조제3항), 주식의 출연취득보유 제한 의무(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제50조의3),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제50조의2) 등

로 보임.

셋째, 고액 기부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 산정방식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만 초과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가 세액공제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 이상으로 기부할 유인이 없어지는 문턱효과(threshold effect)가 있을 수 있는데,

고액 기부 유인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 중 기부 금액 비율이 클수록 공제율 또한 커지는 구조로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61 |